

대법상 청구소송 설명회 오노변호사 인터뷰

[illegible]

1990. 08. 21

만행眞相 밝혀 歷史 바로잡아야
개인권리 국가가 대신포기不可

77년 臺灣人 13명 패소했지만 법률제정·조위금 받아

대일(大日)소해(小海)배상(배수)소송이 어렵은 소송(訟)에 틀림없이
만(萬) 죄(罪)를 다(多) 하(下) 찼(才) 다(多) 고(高) 말(末) 했(該) 다(多). <사(司) 진(眞) 李(李) 炳(炳) 勳(勳) 자(子)>

사. 스승들과 함께 참선했다. 『나는 이번 소송의 의미를 3가지로 본다. 먼저 일본법 원리 부분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 배상판결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재판과정을 통해 일본 국내 여론이 환기돼 사회와 배상을 위한 입법이 이뤄지고 일본인들이 식민지배를 통해 과언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알게 된다.』 당시 일본법원은 국가보상 책임은 2차대전후 만들어진 헌법에 규정된 것으로 전쟁전 원법에 규정된 것으로 전쟁전 국정을 지켰다가 52년 일화(日華) 조약에 의해 국적을 상실한 대만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었다. 『일본 국내의 변호사 법원 분파』 『먼저 일본이 불법행위를 분명히 저질렀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저야함을 입증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또 한일전쟁의 이해하고 전후의 일본정부 사이에 배상청구무로 일본정부가 해결보았다고 일본측은 주장하였지만 개인의 권리는 조약에 의해 국가가 대신 포기할 수 없다는 논리로 맞서야 한다고 본다.』

일본에 2억엔 배상소송

사할린 억류동포 113
1990년 8월 14일 중 일본에
해 사할린에 강제연행되었다가
류된 한국인 및 유가족들이 처
으로 일본 정부에 2억엔의 배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마
니치신문>이 13일 보도했다.
한국의 중·소 이산가족회(회장
한·대구사 거주)가 추진, 이
말게 도쿄지법에 제출될 소장
따르면 원고는 현재 사할린에
류하고 있거나, 한국에 돌아온
친류자 및 유족 등 20명으로
본은 강제연행한 뒤 귀환시킴
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리로 1명당 1천만엔씩 2억엔
우선 청구한다"고 밝혔다.